

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2. 9. 11(수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28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56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2차(2002. 9. 7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조명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 공포되고, 1999년 1월 11일 1차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, 현행법 제6조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,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
- 안 제6조에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서, 적극적인 공개 행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보장을 보장하고, 시정에도 적극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개의 정의에 인터넷과 시보 공개를 추가(안 제2조 3호)
-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(안 제6조)
- 현행 제6조(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)를 안 제6조의 2로 조항을 개정
- 행정정보 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 기관이 정기 또는 수

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도록 하며, 정기 공개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명시(안 제8조제3항 신설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-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3월 1일 시행 이후 그동안 공개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발적인 공개 행정이 미흡한 문제점을 인식하고,
- 안 제6조 신설 조항에서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,
- 안 제8조제3항 신설 조항에서 100인 이상 다수 청구인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를 인터넷과 시보에 공개하고, 정기 공개는 1월과 7월에 공개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,
- 업무계획과 중장기 종합계획 등 계획중인 업무중 민감한 부문이 있을 경우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나, 안 제6조의2 규정에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,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